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도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2년 8월 일 제출자 : 도회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

### 1.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주민 자긍심 고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범위, 대상, 지원금액(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지원절차 및 환수(안 제6조 ~ 안 제7조)

###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2. 8. 23. ~ 8. 29.

5.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b>				
<input type="checkbox"/> <b>지원 대상 학생 인적사항</b>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b>교복지원금 지급 계좌</b>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b>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b>				
성 명		연락처 (휴대폰)	학생과의 관 계	
<input type="checkbox"/> <b>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b>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 금 액	원
<b>※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여부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사업 종료 후 5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성주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p> <p>※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p> <p><b>▶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b></p>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b>성주군수 귀하</b>				
<input type="checkbox"/> <b>첨부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증명서 : 신청서 학교 제출 시 제외</li> <li>- 통장사본</li> <li>- 주민등록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li> </ul>			



**붙임****관련 법령**

##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